

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243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3월 5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현행대로 1년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함(안 제4조, 안 부칙 제2조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기 타 : 수정안 조문 대비표 참조.

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.

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위원의 임기) <u>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u>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<u>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u> ----- ----- -----.</p>
부 칙	부 칙	부 칙
	<p><u>제1조(시행일) 이 조</u> <u>례는 공포한 날부터</u> <u>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위원의 임기에</u> <u>관한 적용례) 제4조</u> <u>의 개정 규정은 이</u> <u>조례 시행 후 제3조</u> <u>제2항에 따라 새로</u> <u>위원을 위촉(연임을</u> <u>포함한다)하는 경우</u> <u>부터 적용한다.</u></p>	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</u> <u>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삭 제></p>

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심사·수행하기”를 “수행하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사항의 심의”를 “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연구”를 “연구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장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각1명”을 “각 1명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 “심의안건”을 “안건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심의를”을 “운영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안건”을 각각 “정책연구과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의원입법에 관한 분석·평가 및”을 “입법 및 정책에 관한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전단 중 “발굴 및 심사를”을 “발굴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위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<u>심사·수행하기</u>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 <u>수행하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의회위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·조사·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<u>사항의 심의</u></p> <p>2. <u>서울특별시의회위원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·심의</u></p> <p>3. <u>시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</u></p> <p>4. <u>주요시책사업의 분석·평가</u>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 <u>사항</u> 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
사항의 심의

5.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
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
정책의 연구

6.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
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
례」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
역 결과물의 평가 등

제3조(구성) ① (생략)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
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1. (생략)

2.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
의원 각1명

3. 4. (생략)

③ (생략)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
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
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
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
다.

<신설>

5. -----

----- 연구에 관한 사항

6. 「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
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」-

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
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 각 1명

3. 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
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
있다.-----

-----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
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

제7조(회의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~ ⑤ (생략)

제8조(채택된 의안의 제출) ① 위

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한다.

② 의장은 제출된 의안 중 의원이 요청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고 그 외의 의안은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제53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법권고 한다.

제9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효

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 안건-----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9조(소위원회) ① -----

----- 운영을 -----

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안건의 사전검토·조정 등에 관한 사항
2.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
3. 토론회,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·평가 및 연구

③·④ (생략)

제10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② (생략)

② -----
-----.

1. 정책연구과제-----

2. 정책연구과제-----

<삭 제>

4. ----- 입법 및 정책에 관한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의견청취 등) ① -----
----- 발굴을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